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와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도농교류법 제28조제4항 삭제에 따라 자구 수정(안 제15조 수정)
- 나.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과 관련된 내용 삭제
(별표2 제2호 사목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2 제2호 사목을 삭제하고 “아”목을 “사”목으로, “자”목을 “아”목으로, “차”목을 “자”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2 제2호사목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8조 제1항부터 <u>제4항</u>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 ----- ----- <u>제3항</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연 락 처	(044) 201 - 1590